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061
------------	------

2019년 12월 17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15일, 오중석 의원 외 12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제5차 교통위원회(2019년 12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오중석 의원)

- 가. 제안이유
- 특수여객운송사업 관련 업체의 무분별한 증가로 인해 행정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이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특수여객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의 상향을 통해 무분별한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여 안전관리 강화와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12호)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9. 10. 25 ~ 2019. 11. 1
- 제출의견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원안가결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에 공감하며, 등록기준 대수를 5대 이상으로 상향하여 안전관리 강화 및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함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사업자의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를 상향 조정하여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해 안전한 운송사업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¹⁾의 등록기준을 1대 이상으로 하되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 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 [별표3]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를 5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운송사업자가 사무실 및 영업소 등의 운송부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61년 3월 관련 법²⁾이 제정될 당시에는 영업을 하기 위한 최저기준 대수 제한이 없었으나 '85년 4월 관련 법령³⁾이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최저기준을 “차량 1대”로 규정하고 있어 등록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임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2 나.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래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2)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 1962. 1. 1.] [법률 제916호, 1961. 12. 30., 제정]

3)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시행 1985. 5. 31.] [교통부령 제818호, 1985. 4. 30., 일부개정]

- 또한 당초 면허제로 운영되던 사업이 '93년 등록제로 변경된 이후 업체와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8년말 현재 사업체는 130개 업체로 10배, 차량대수는 595대로 약 3.8배가 증가하였음

<면허제 이전·이후 서울시 특수여객 업체 및 차량등록 현황>4)

구분	면허제(1993. 8)	등록제(2018. 12)	증가	증가율
회사	13	130	10배(117)	900%
차량대수	153	595	4배(442)	289%

- 서울시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현황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차량 1대로 영업하는 1인 업체는 '18년말 현재 43%(130개 업체 중 56개 업체)에 이르고, 10대 이상을 보유한 업체는 10개 업체로 8%에 불과한 상황임

<규모별 등록대수 현황(차량 대수별 현황)>5)

서울	0대		1대		2대		3대		4대		5대		6-9대		10대 이상		총계	
	업체	등록대수	업체	등록대수	업체	등록대수	업체	등록대수	업체	등록대수	업체	등록대수	업체	등록대수	업체	등록대수	업체	등록대수
	1	0	56	56	19	38	14	42	5	20	7	35	18	131	10	273	130	595

- 한편 서울시 특수여객 등록대수는(595대) 서울시 1일 평균 사망자수(124명⁶⁾)에 비해 약 4.8배나 많은 상태로 특수여객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4) '서울시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면허제 이전·이후 서울시 특수여객 업체 및 차량등록 현황자료

5) '서울시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규모별 등록대수 현황(차량 대수별 현황) 자료

6) KOSIS(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국가통계포털-'2018년 서울시 원인별 사망자 수' 45,219명/ 365일=123.8명

‘93년 특수여객 자동차 가동률이 69%⁷⁾였던데 비해 ‘18년의 경우 21%⁸⁾로 하락하여 영업환경이 열악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업체간의 과당 경쟁, 잦은 폐업과 진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수여객 운송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5대 이상으로 상향토록 함으로써

특수여객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특수여객 운송사업의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개정조례안은 특수여객 운송사업의 대형화를 유도함으로써 시장 안정화 및 행정적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나 진입장벽이 일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 이후 이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이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정의를 추가하고 있는 바, 이는 현행 조례에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이 새로이 반영됨에 따라 관련 법령 사항을 반영하여 정의를 신설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음

7) ‘93년 등록대수 153대, 1일평균 사망자수 105명, 사망자수 대비 가동률 69%

8) ‘18년 등록대수 595대, 1일평균 사망자수 124명, 사망자수 대비 가동률 21%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특
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래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대수는 5대 이
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송부대시설 중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